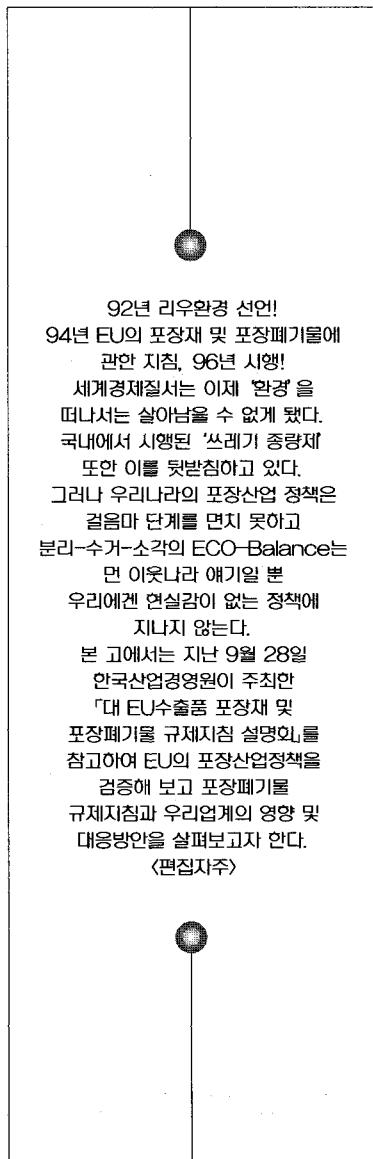




# 대(對)EU 수출품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지침



92년 리우환경 선언!  
94년 EU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 
관한 지침, 96년 시행!  
세계경제질서는 이제 환경을  
떠나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.  
국내에서 시행된 '쓰레기 종량제'  
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.  
그러나 우리나라의 포장산업 정책은  
걸음마 단계를 면치 못하고  
분리-수거-소각의 ECO-Balance는  
만 이웃나라 얘기일 뿐  
우리에겐 현실감이 없는 정책에  
지나지 않는다.  
본 고에서는 지난 9월 28일  
한국산업경영원이 주최한  
「대 EU수출품 포장재 및  
포장폐기물 규제지침 설명회」를  
참고하여 EU의 포장산업정책을  
검증해 보고 포장폐기물  
규제지침과 우리업계의 영향 및  
대응방안을 살펴보자 한다.  
〈편집자주〉

## EU의 지침제정 배경

▲ 유럽 각국들은 포장폐기물에  
대한 규제법령과 제도를 제정·시행  
하고 있으나, 국토면적이 좁아 폐기  
물처리를 위한 유효매립장의 한계로  
어려움을 겪고 있다.

독일(구 서독지역)에서는 약 3천  
만톤/년의 도시쓰레기가 발생하고  
종래에는 약 1/3은 소각, 2/3는 매  
립에 의존해 왔으나, 매립지의 여력  
이 약 10년밖에 남지 않아 도시쓰레  
기 중 약 30중량%(용적은 50%)인  
포장폐기물 문제의 해결이 매우 중  
요해지고 있다.

프랑스의 경우 과거 30년간 가정  
쓰레기의 증가율이 60중량%임에 비  
해 포장폐기물은 같은 시기에 약 3  
배로 현저하게 증가했다.

▲ 바젤협약이 발효(92.5.5.)됨에  
따라 협약가입국은 국가간 이동통제  
대상인 유해폐기물에 대한 비가입국  
가와의 교역이 금지되고, 협약가입  
국가와의 교역도 상대국의 수입동의  
를 얻도록 하여 선진국의 개도국에  
대한 폐기물 불법거래가 전면금지  
되었다.

자국에서 발생된 유해폐기물은 자  
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젤협약의  
기본 정신이다.

▲ 독일 등 일부 EU회원국이 포  
장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 
따라 다른 회원국에 비해 재활용 가  
능한 포장폐기물(특히 플라스틱포장  
폐기물)의 수거가 증대되어 국내 재  
활용 능력을 초과하게 되자, 인근  
국가에 이들 폐기물을 불법수출하는  
사례가 발생하여 여타 회원국의 폐  
기물 관리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 
있다.

독일은 91년 6월 포장폐기물규제  
령을 공포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  
자로 하여금 포장폐기물의 회수·재  
활용을 강력하게 의무화하였고  
DSD(Dual System Deutschland)  
회사를 설립·운영하여 프랑스 등 유  
럽 각국의 포장폐기물정책에 커다란  
영향을 미치고 있다.

▲ 재활용 등 폐기물처리문제가  
무역장벽으로 등장하여 국가간 분쟁  
의 상징적인 사건들이 최근 발생하  
고 있다.

88년 독일-덴마크 분쟁시 구주재  
판소는 리필과 재활용이 가능한 용

기로만 수출을 요구한 덴마크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 환경을 이유로 포장재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.

89년 독일이 프랑스의 생수업체인 에비앙에 생수용기인 PET병에 0.5DM(약 250원)의 Deposit(소비자예치금)을 부과시키자, 에비앙사는 자유무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독일의 주장에 굽복했다.

▲ EU 차원의 포장폐기물 규제문제는 약 10년전부터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91년부터 논의가 활발해져 93년12월 유럽각료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, EU의 지침(안)에 대해 불만을 갖은 독일, 덴마크, 네덜란드는 기권하여 다수결방법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94년12월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94년12월31일 EU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지침이 '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(EU 관보)'에 게재됨으로써 발효됐다.

## 지침의 주요내용

### 제1조 (목적)

▲ 포장 및 포장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줄이면서, 이의 관리에 관한 개별회원국들간 조치를 조화시키고 아울러, 무역장벽과 경쟁왜곡을 제거하는데 있음.

### 제2조 (대상)

▲ EU에서 시판되는(Marketed) 모든 포장, 그리고 포장폐기물(가정

용, 상업용, 산업용 포함)을 대상으로 하나, 육상, 철도, 해운, 항공용 컨테이너는 제외됨.

▲ 참고로, 당초 EU에서 생산된 (Produced) 포장 및 포장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, 시판되는 포장이 대상이 됨으로써 수입업체, 이에 따른 역외수출업체도 동 지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.

### 제4, 5조 (추가조치)

▲ 필수요건(Essential Requirements) 준수 외에 회원국들은 수거제도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.

▲ 이와관련, 회원국들은 EU조약에 부합하는 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재사용(Reuse)제도를 권장할 수 있음.

### 제6, 7조 (목표 및 추진일정)

▲ 회원국정부는 재사용 또는 분리회수(Recovery)를 위해 사용 후 포장물의 반환 또는 수거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96년6월30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하기 목표(Target)가 달성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.

- 분리회수(Recovery) 목표율 : 50~65%(무게기준)
- 재활용(Recycle) 목표율 : 25~45%(무게기준)
- 포장재 재질별 최소 재활용 목표율 : 15%이상(무게기준)

▲ 분리회수 및 재활용능력을 보유한 회원국은 목표달성을 위해 취한 조치들이 역내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

여타 회원국이 동 지침을 준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동 지침상의 최대 분리회수 및 재활용목표율을 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음.

이러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도입할 예정인 회원국은 집행위에 사전 통고해야 하며, 집행위는 상기조치들이 자의적인 차별수단이거나 회원국간 위장교역제한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됨.

▲ 회원국 중 그리스, 아일랜드,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목표달성을 허용함으로써, 일시유예기간을 부여하되 2001년 6월30일 한 최소한 25% 분리회수의무를 부과함.

### 제8조, 부록 1 (표시제도, Marking System)

▲ 재사용, 분리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96년 12월 31일까지 포장재 재질에 대한 분류표시제도를 도입함.

- 1~19 : 플라스틱  
20~39 : 종이 및 카드보드  
40~49 : 금속, 50~59 : 목재  
60~69 : 섬유, 70~79 : 유리

### 제9조, 부록2 (포장필수요건)

▲ 회원국들은 포장재가 특정의 필수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동 필수요건은 안전, 위생, 소비자 요구 부응에 필요한 만큼의 포장무게 및 부피의 최소화, 유독·유해물질의 최소화, 재사용·재생 분리회수에 따른 적합성 등임.

▲ 동 요건에 부합하는 포장재는 EU 공동체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이

보장되나 부합하지 않은 포장재는 98월1일1월부터 역내유통이 금지됨.

#### 제10조 (표준화)

▲ 유럽표준화기구(CEN :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sation)가 집행위의 위임을 받아, 상기 필수요건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게 됨.

▲ 집행위는 포장재의 원료, 제조 공정, 소비,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분석(LCA:Life Cycle Analysis)의 기준과 방법, 중금속 및 여타 유해물질의 측정, 그리고 환경노출, 재생원료의 최소용량 기준, 재활용방법, 표시제도에 관련된 기준에 관한 유럽표준의 제정을 증진해 나가도록 함.

#### 제11조 (중금속 용량제한)

▲ 포장재 및 포장재원료에 납, 카

드뮴, 수은, 크롬성분의 총함량을 점차적으로 낮춤으로써 유해성분의 규제를 강화해 나감(미국표준과 일치).

- 98.6.30 : 600PPM 미만
- 99.6.30 : 250PPM 미만
- 2001.6.30 : 100PPM 미만

#### 제12, 13, 14조 (국별 데이터베이스 및 소비자 정보)

▲ 집행위와 회원국들이 동 지침의 이행을 감시하는데 용이하도록 회원국차원에서 포장 및 포장폐기물 흐름의 크기, 특성 및 진화과정에 대한 정보공급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며, 소비자정보프로그램을 98년7월까지 제정해야 함.

▲ 각 회원국이 집행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폐기물관리계획에는 포장폐기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, 회원국들은 동 지침이행을

위해 채택코자 하고 있는 조치들을 집행위에 송부해야 함. 집행위는 이를 검토하고, 필요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제15조 (경제조치 : Economic Instrument)

▲ EU는 동 지침의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조치를 채택할 예정인 바, 공동체 차원의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개별회원국은 독자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. 단, 여사한 조치들은 오염자부담원칙(PPP)과 같은 EU의 환경원칙과 여타 EU 조약상의 의무와 일치되어야 함.

#### 제19조~21조(회원국 대표위원회)

▲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(집행위 관계관 주태)에서는 동 지침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을 협의하고, 데이터베이스와 표시제도를 과학, 기술진부에 따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들에 관해 합의를 보도록 함.

#### 제22조(회원국의 법령도입)

▲ 회원국들은 96년 6월 30일까지 동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및 제도를 도입해야 함.

▲ 동 지침의 발효일(94년 12월 31일) 이전에 생산·사용 중인 포장재는 지침준수대상에서 제외되나, 99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허용. ☐

(표 1) EU 지침사항의 시행주요일정

시행일정	내 용
'94.12.31	• EU의 「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」발효
'96. 6. 30	• 회원국별로 지침준수에 필요한 법령도입
'96.12.31	• 포장재 분류표시제도 도입
'98. 1. 1	• 포장필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포장재의 역내유통 금지
'98. 6. 30	• 납, 카드뮴, 수은, 크롬성분 규제 (600 PPM 이하)
'99. 6. 30	• 납, 카드뮴, 수은, 크롬성분 규제 (250 PPM 이하)
2000. 6. 30	• 납, 카드뮴, 수은, 크롬성분 규제 (100 PPM 이하)
'96. 6. 30~ 2001. 6. 30 (1단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분리회수(Recovery) 목표 : 50~65%</li><li>• 재활용(Recycling)목표 : 25~45%</li><li>• 포장재별 취소 재활용 목표율 : 15%이상</li></ul>
2001. 6. 30~ 2006. 6. 30 (2단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2단계 5년 목표를 설정하되 1단계 목표보다 상향조정</li></ul>